

##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러시아연방 민법 시행 예정

2012년 5월 7일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연방 민법 제1편 제1장, 제4절 및 제5절, 제3편 1153조'가 대폭 개정되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거래, 거래무효 효과, 소멸시효 등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된 민법 규정에 특히 유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러시아연방 주식회사법 개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8일로 단축

2013년 4월 5일 러시아연방 법률 제47-FZ에 따라 러시아연방 주식회사법 제4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러시아정부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금융기관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45일에서 8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기존의 45일이 적용됩니다.

### 러시아연방 정부 소유 기업 매각계획 수정 발표해

2013년 4월 18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2011-2013년도 러시아연방 정부 재산 민영화 기본방향 및 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3개 비공개주식회사 주식, 11개 유한책임회사 지분, 부동산을 포함한 기타 재산 727건을 금년 말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연방 정부는 3,517개의 연방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2,950개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가 100%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수는 1,757개에 달합니다.

## 러시아연방 정부 표준실시협약 개정해

2013년 3월 1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31호에 따라 표준실시협약이 개정되었습니다. 표준실시협약은 러시아연방 실시협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러시아연방 정부가 작성하며, 수도, 난방, 가스, 전기, 하수, 생활폐기물재활용 시설 등 공공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기본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